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유형 구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장규덕
	담당부서 (과)	불공정거래개선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은청		연락처	044-204-7942
	과장	성낙영		이메일	wkdrbejr1@mail. go.kr

2026. 02. 05.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이은청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유형 구체화								
	2.규제조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3.위임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2.20~2026.04.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회적 거래 관행'이 포착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만으로 공정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시행령에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기업의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7.규제내용	위탁기업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 규제자</td><td>위탁기업(대·중견기업 및 위탁중소기업)</td><td>약 2만5천여 개사(수위탁거래계약이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중 대기업 3천여개 사, 중기업 2만2천여개 사; '23 중소기업 기본통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위탁기업(대·중견기업 및 위탁중소기업)	약 2만5천여 개사(수위탁거래계약이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중 대기업 3천여개 사, 중기업 2만2천여개 사; '23 중소기업 기본통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위탁기업(대·중견기업 및 위탁중소기업)	약 2만5천여 개사(수위탁거래계약이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중 대기업 3천여개 사, 중기업 2만2천여개 사; '23 중소기업 기본통계)								
9.규제목표	수탁기업과 사전 협의 없는 미연동 합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위탁기업에 별도의 실무적·경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 준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연장여부
		미해당		
		일몰유형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u>원재료</u>	2. ----- <u>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요 원재료 <u>가격</u> 의 기준 지표	4. ----- <u>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요 원재료 <u>가격</u> 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6. ----- <u>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u>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u>

현 행	개 정 안
	2.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3.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초기 운영 실태

-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어 '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
-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회적 거래 관행'이 포착*

* 미연동 약정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서 양식을 수탁기업에게 배포·체결한 사례 적발('25.12)

□ (문제점) 정부개입 부재 시 부작용

-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만으로 공정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탁기업은 보복 우려로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그간 정부는 가이드라인 배포 등 비규제적 수단을 활용해 왔으나, 강제성 없는 권고만으로는 '회피 목적의 지능적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
- 현장의 우회적 연동제 회피 관행이 고착화되면, 결과적으로 연동제 전반의 정책 신뢰도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

□ (필요성) 시행령에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유형의 구체화 필요

- 법률에서 위임한 '탈법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탁기업에게는 명확한 준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수탁기업에게는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내용)**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3가지 탈법행위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근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 간담회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불공정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기업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
 - 실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동제 회피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중소기업	수탁 중소기업,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 (현장간담회 8차례)	- 위탁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연동요청이 어려우므로 사실상 미연동합의 강요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 개정 안 상 탈법행위 유형에 해당 내용을 반영

3. 규제목표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수탁기업과 사전 협의 없는 미연동 합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최소규제)** '탈법행위' 유형을 3가지 핵심 형태로만 명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을 확보
- **(균형확보)**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계약 활동은 보장하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우회적 회피 행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 자유와 규제 간의 균형을 도모
- **(이익형량)** 위탁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보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얻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월등히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대한 차등규제는 이미 적용
 - 위탁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 의무를 지지 않아 피규제 집단에서 제외(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 중기업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탈법행위 유형은 연동 약정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 중기업에게는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제시하기 곤란
- 위탁 중기업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면, 반대로 정책수혜자인 대다수 수탁 중소기업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우려 제기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분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기업결합 제한 탈법행위
법적근거 (위임조항)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공정거래법 제13조
수임조항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위임대상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
법률 위임조항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3. <u>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u>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대통령령 구체화 내용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⑤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 2.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3. 수탁기업과 협의 없이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4.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6.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 **(표준모델)** 본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와 같이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제1호부터 3호) 마지막 호에 포괄 규정을 두는 '열거주의 및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
 - 이는 공정거래 분야의 상위법령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는 입법 기술로서, 규제의 형식이 이례적이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제도정합)**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타 법령에서는 탈법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중
 - 연동제 역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로써, 타 공정거래 법령 수준의 탈법행위 방지 장치를 갖추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준수용이) 연동 회피를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장애요인) 수·위탁 계약의 다양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설된 탈법행위 금지 규정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두고 수·위탁기업 간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해소방안) 탈법행위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담은 상세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연동지원본부의 상담·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법 해석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수위탁계약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납품 대금연동지원본부 등 구축된 행정 인프라를 활용하여 별도의 조직 신설, 인력 충원 없이 효율적인 단속과 운영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와 연동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이미 배정되어 있으므로 탈법행위 단속을 위한 별도 재정은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중기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실무 간담회를 총 8회 개최
 - * 산업연·중기연 등 전문가('25.5), 삼성전자 등 대기업('25.7), 대상 등 중견기업('25.8), 그 외 연동지원본부 실무간담회 분기별 진행 등
-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부당한 경영상 정보요구 금지와 관련하여, 연동약정 체결에 필요한 원가정보의 범위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26.1월)
 - 대다수의 기업은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중만 알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거래 특성상 광범위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
 - 위와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동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금지행위를 규정

2. 향후 평가계획

-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직권조사 및 분쟁조정 요청 사건(신고 사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탁기업의 법 준수 여부 등 확인
- 매년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의 존치여부 및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환류 체계 구축 예정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탈법행위'의 범위를 3가지 핵심 유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조치임
- 위탁기업에게는 명확한 행위 준칙을 제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탁기업에는 부당한 회피 행위로부터의 실효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함

- 규제 강화에 따른 위탁기업의 계약 관리 부담보다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의 합리적 분담으로 얻는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상생협력의 가치가 월등히 큼
- 따라서, 본 규제는 시장 자정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도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